

예산총칙

1. 2022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의 총액은 5,061,751천원으로 한다.

회 계 별	세입,세출예산총액(단위:천원)	비고
합 계	5,061,751	
일반회계	1,627,115	
특별회계	3,434,636	

2. 일반후원금과 사업수입금은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다.

3. 법인전입금은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다.

4. 법인전입금, 후원금 및 이용료 등 자부담 금액에 대하여는 직원의 추가수당지급, 추가인력채용 등 기타복리후생비로 사용할 수 있다.

5. 예산집행 시 불가피한 예산전용의 경우 "관", "항"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전용하고, "목"간의 전용은 관장의 결재로 처리한다.

6. 기타 회계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변경된 과목으로 승인된 것으로 보며, 그 외 예산총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집행한다.